

- Part 1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목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배경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
3. 개인정보 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4. 개인정보 보호 정책방향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붙임자료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및 벌칙 규정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배경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1-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목적

개인정보
침해사고



- 개인정보 활용 범위 증가
- 개인정보의 가치 증대
-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법 적용
사각지대



- 법 적용대상의 사각지대 발생
- 개별법간 보호원칙, 처리기준
및 행정체계 상이

국제적인
공감대



- 다국적 기업 등장
- 국가간 정보교류
- 프라이버시 라운드 대두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법, 제도의 일원화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추진 경과

법 제정 추진 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1.09.30)

국무회의의 의결('11.3.22), 공포('11.3.29)

본회의의 의결('11.3)

국회 행안위 상정('09.2), 공청회 개최, 법안심사소위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 국회 제출('08.11)

개인정보 보호법 의원안 발의

17대 국회에서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 의원 발의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1.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 위한 개별 법령

민간 · 공공 법률체계 일원화

기존 법률의 문제점

- 산업별·영역별 보호 수준 불균형
- 공통된, 일원화된 보호원칙 부재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 법체계 일원화
- 산업·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재
-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 권익보호 강화

2-2.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 3 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 4 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 5 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 6 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 7 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 8 장 보칙

제 9 장 벌칙

<부칙> 시행일, 다른 법률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3

개인정보 보호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3-1. 달라진 주요 용어

- 해당 개인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가 자신에 관한 것
- 정보의 오·남용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

정보 주체

**개인정보
파일**

-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전자적 파일 + 수기파일 포함

**개인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에 관련한 모든 행위

3-1. 달라진 주요 용어



3-2. 적용대상 확대 및 행정체계 단일화



개별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비율 높음

※ 2010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
총 54,382건 중 법 적용 제외
사업자 비율 73.7%(40,431건)

3-2. 적용대상 확대 및 행정체계 단일화



개별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비율 높음

정보통신망법 상의
준용사업자

3-2. 적용대상 확대 및 행정체계 단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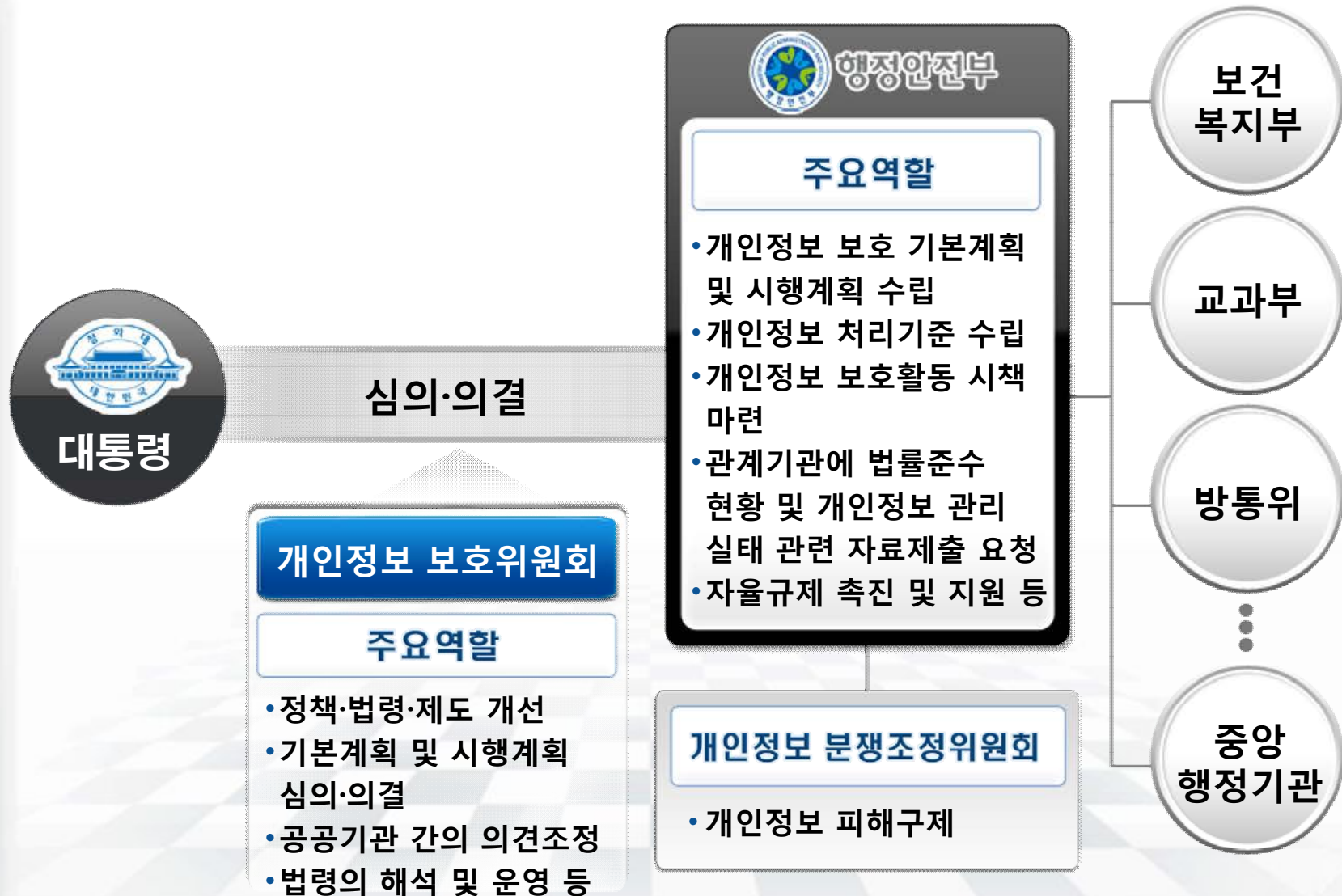
개별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비율 높음

정보통신망법 상의
준용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공공, 정보통신, 비영리 단체 등

3-2. 적용대상 확대 및 행정체계 단일화



3-3. 주요 강화조치 및 변경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 획득	· 수집 · 이용을 위한 동의	· 필수 / 선택 동의 구분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홍보 및 판매목적 개인정보]
동의 예외	· 계약이행에 필요하며 경제적 기술적으로 동의 곤란 · 요금정산 등	· 계약체결 및 이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위탁	· 원칙적 동의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수탁자도 개인정보처리자로 취급 · 위탁내용 공개
개인정보의 유출	· 침해사고 신고 · 분쟁조정 신청	·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의무화 · 집단분쟁조정 신청 · 단체소송 제기

3-3. 주요 강화조치 및 변경 내용

처리단계 변경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수집 원칙
※ 최소수집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선택항목) 거부 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거부 시에도 서비스 이용 가능 조치
-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3-3. 주요 강화조치 및 변경 내용

안전조치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조치 요건 강화
- 업무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강화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민간분야는 적극 권고)
- 종이(수기) 문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위탁 고지

3-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 강화

고유식별정보 처리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정보주체의 별도동의 또는 타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 인터넷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방법 의무적 제공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3-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규제 강화

적용범위

- [적용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민간 확대
- [적용 범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설치금지
[화장실, 목욕 시설 등]

<교통, 안전 등 공익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 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 의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 설문조사 · 여론조사 등 실시

의견수렴 (공공기관)

설치 운영 시 제한사항

-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녹음 금지
- 설치에 대한 안내판 설치
- 운영(위탁내용 포함) 관리지침 마련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3-6. 정보주체 권익보호 강화

정보제공 시 선택가능

- 최소정보 이외의 추가 정보 요구 시 선택적 동의 가능

-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의무적 통보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권리 신설
 - ※ 처리정지 : 개인정보 동의철회권과 유사하지만 보다 넓은 개념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3-6. 정보주체 권익보호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 통지
※ 통지 내용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를 위한 대처방안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행안부 및 전문기관에 신고
- 피해확산 방지 대책 마련
-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권리 및 입증 책임

- 단체소송제도 도입(민사소송법 적용)
- 공공 · 민간 분야의 분쟁조정 기능 일원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까지 확대)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강화

3-7. 사업자 Q&A



3-7. 사업자 Q&A

-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활용하는 모든 기업 및 단체, 기관 등

- 개인정보 처리파일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 기업, 단체

- 처리단계별 강화 내용 및 업무 프로세스 재검토 필요

과태료와 벌칙 규정 참조
[붙임자료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
[\[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http://privacy.kisa.or.kr)
- 118 상담센터
[국번없이 118]

4

개인정보 보호 정책방향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법 수행체계 기반 구축

-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및 표준 지침 마련
- 개인정보 처리 실태 파악

법제 인식 제고 및 자율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시행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사전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자료제출 및 검사, 컨설팅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

사후 대응 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집단 분쟁조정 방안 마련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및 상담실 운영 강화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붙임자료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설치기준

설치 기준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목적

공익
목적

※ 이외의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금지

설치 제한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사우나)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

※ 예외 :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설치기준

설치 및 운영 고지

설치 장소마다 정보주체가 CCTV 설치 및 운영 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해 고지

고지 내용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고지 위치

-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 및 장소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판 예제

CCTV 설치 안내문

- 범죄예방과 학생의 안전을 위해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 촬영범위 : 360°회전 100m이내지역
- CCTV운영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OO초등학교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OO초등학교 행정실 00) 0000-0000

〈붙임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설치기준

운영 및 관리 지침 마련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지침 마련

- 설치 근거 및 목적
 - 설치 대수, 위치, 촬영범위 및 성능
 - 관리 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 권한자
 - 녹화시간
 - 녹화기록의 보관(장소), 관리, 폐기 방법
 - 전송되는 정보의 모니터링 방법 및 장소
 - 영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적용

업무 위탁

수탁기업 내 필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 보유
- 수탁자 내부 전문인력 보유
-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 범위
- 정보 접근 제한 등을 기재

〈붙임 2〉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적용대상 및 평가절차

영향평가 의미와 목적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일련의 평가절차

기존 사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 수집 정보 축소 및
불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제공차단 등
위험요소 차단

적용대상

공공기관 : 의무

※ 예시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 및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예상기관
-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 기관이 타 시스템과 연계 및 연동할 경우
- 연평균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민간기업 : 적극적 권고 →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감독 의무 이행 기준

〈붙임 2〉 개인정보 영향평가 – 수행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 전 고려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른 침해위험 정도

평가절차



〈붙임 2〉 개인정보 영향평가 – 2011년 주요 사업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공공기관 주요 정보화 사업 중 민감·중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주요 정보화 사업을 선정해 개인정보 시범 영향평가 수행
 - 영향평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대상사업 선정
※ 직접 방문 컨설팅 (5개 사업), 온라인 컨설팅 (10개 사업)
-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 영향평가 수행 결과를 타 공공기관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사례집 개발

영향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보급

- 2010년도에 개발한 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이용이 편리하도록 개선 및 보급 확대
 - 2010년 온라인 영향평가 대상기관 설문을 통해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
※ 주요 개선사항 :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화 사업별 침해요인, 개선대책 등을 DB화해 이용자가 쉽게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등

〈붙임 2〉 개인정보 영향평가 – 2011년 주요 사업

영향평가 인식제고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영향평가 절차, 지원프로그램 사용방법 등을 기관별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로 제작·배포

※ 온라인 플래시 동영상, e-book, 브로셔 등

영향평가 전문교육 과정 시행

- 영향평가 대상기관의 자체 수행능력 강화, 영향평가 의무화 등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 과정 시행
 - 전문교육 시행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영향평가 교육과정 개발

※ 개선요구사항 : 영향평가 실무에 대비한 실습교육 확대,
법 환경 변화 반영 등

※ 연간 4회(4, 6, 9, 11월), 회당 50명, 총 200명 교육예정

<붙임 3>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및 벌칙 규정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 제공·위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주체 권리보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3조)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4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제22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제2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파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 받은 자(제22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Thank you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